

전기요금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전력시장에서 전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과 같이 공급자와 소비자가 적절한 공급량과 소비량을 결정하는데 신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요금이 전기라는 상품을 제공받는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보다는 아직도 일종의 공공재 제공에 대한 세금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여전히 공공요금의 범주에 속하고, 물가관리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전이 소비자에게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요금은 규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도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조정하고 있으며, 조세적 성격으로 인식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이러한 방식으로 부과되는 근거는 한전이 수직통합적 독점체제 하에서 전기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던 시대를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의 전력공급 시스템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던 수직통합적 독점체제에서 발전부문과 판매부문이 분리되어 시장경쟁체제로 변화된 지 어느덧 20~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전이 여전히 송배전 및 판매부분을 독점하다보니 과거 전기요금을 바라보던 시각이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총괄위가 보상방식이라는 전기요금 산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이 환경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전력생산의 방식도 친환경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친환경적 전력 생산 및 공급 비용이 높아서 깨끗한 전기에 대한 가치는 높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에 정당한 공급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요금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반응에 더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사용의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가 당연히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공기업인 한전의 책임으로, 때로는 일부 국민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당장은 소비자들이 합당한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1973년 이전에는 전압별 요금체계를 유지하다가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리와 각종 정책적 목적을 반영하기 위해 용도별 요금체제로 이행한 것입니다. 용도별 요금체계하에서 특정 용도 또는 소득계층의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용도 간 교차보조와 용도내의 형평성 저해 등 전력사용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공급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전압별 요금체제로 전환하자는 정책제안이 아이러니하게도 전력생산의 공급비용을 제대로 반영한 오랜 과거의 요금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전기요금도 통신요금처럼 상품이나 서비스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라는 상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데 대한 비용이 정당한지를 검토하고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요금 산정의 원칙입니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피해와 관련된 비용을 요금의 형태로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전기 공급과 소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